



2024학년도 하계방학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오리엔테이션

장학지원팀

DCU DAEGU
CATHOLIC UNIVERSITY

DCU DCU

가이드북 p.9

근로시간

- 일, 주, 학기당(520시간) 최대근로가능시간 내에서 근로 가능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방학중)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근로기간

1차 근로기간 : 2024.06.24(월) ~ 2024.08.30(금)

2차 근로기간 : 2024.07.01(월) ~ 2024.08.30(금)

※ 재단 미신청자는 6/21 재단에 신청 후 7월 이후 근로가능

현장실습형 근로기간 : 2024.07.17(수) ~ 2024.08.30(금)

※ 출근부 등록 후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시작일 조정 가능

※ 반드시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근로시작하여야 함

가이드북 p.9

근로장학금

-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 시간에 근거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산정함

교내 근로

9,860원

교외 근로

12,220원

* 온라인 출근부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근로활동 전후로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해야함

- 30분 단위가 기준**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월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45분일 경우, 40시간 30분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함(15분 절사)

장학금 지급일

- 근무한 달의 다음달 3일까지 기관에서 출근부 제출
- 근무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학생의 정정사유서 제출 마감
- 근무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근로비 지급
- 단, 8월 근로비는 9월 30일에 지급**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 ①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는 근로당일 작성
 - ② 점심시간 필수 체크(1시간 이내 는 근로기관에서 수정 가능)
 - ③ 근로장학생 과실로 출근부 미입력, 수정은 출근부 정정사유서 제출
(위치기반 동의 시 매월 **2장**, 미동의시 **1장** 까지 제출 가능, 제출건수 모두가 Y일 경우 동의로 처리)
 - ④ 점심시간 및 근무시간 이후 근로 필요시 특별근로사유서 제출
 - ⑤ 출근부정정사유서, 특별근로신청사유서, 근무포기사유서 → 장학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 ⑥ 해외 출입국시에 출근부 등록 절대 금지
- » 출입국 관리기록 조회로 부정근로 의심, 확인 후 부정근로자로 처리




근태관련 유의사항

- ① 근로기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의무(한국장학재단에서 포털에서 가능)
 - ① 한국장학재단 상호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자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근로 중지된 경우 다음학기 근태/근로 불량자로 -10점 감점
 - ① 근로 중간이라도 근로기관에서 근태 등을 지적하면 학생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2회 이상 근로기관 이의 제기시에는 장학지원팀에서 상호확인 후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음
 - ① 선발자 중 근로기간과 장학지원팀에 의사통보 없이 근로를 포기하거나, 3일이상 무단결근 하는 경우 다음학기 근로장학생 선발이 제한됨
- » 근로포기시 반드시 근무포기사유서 장학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가이드북 p.28

Korea Stud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

*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 입력한 출근부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12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중앙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가이드북 p.34

국가근로장학금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근로학생 배정(장학지원팀) 이후 필수절차 이행가능

국가근로장학금(취업연계유형) 신청

- 1,2차 통합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별도신청 가능

서약서/사이버 OT

- 서약서 확인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서약서 확인 후, 사이버OT 이수
- ※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은 전문교육 이수

학업시간표 등록

- 소속대학 학사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 ※ 계절학기, 실습시간표 포함
- 방학 중 근로 시, 수업(실습)이 없는 경우, 시간표 입력 불필요

업무스케줄 작성

- 근로 전 기관과 협의된 시간으로 업무스케줄을 작성
- ※ 업무스케줄은 상시 수정 가능

안전교육 진행

- 근로지 담당자는 안전교육, 부정 근로 예방교육 등 주의사항 교육

★ 근로진행

- 근로 전후 즉시 입력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 안전교육 내용을 보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서명을 받아 홈페이지에서 제출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

(근로종료 즉시 대학제출 요청)



이럴 땐 근로할 수 없어요!

중복참여 금지 ①



**대학생 근로장학생사업
동시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학업시간 중복불가 ②



학업시간표 중복 불가

-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 근로 불가

재학중이 아닌경우 ③



학적변동이 발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등
- 대학 재학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학에 안내**

자격해제 사유발생 ④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사유

-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가 적발된 경우,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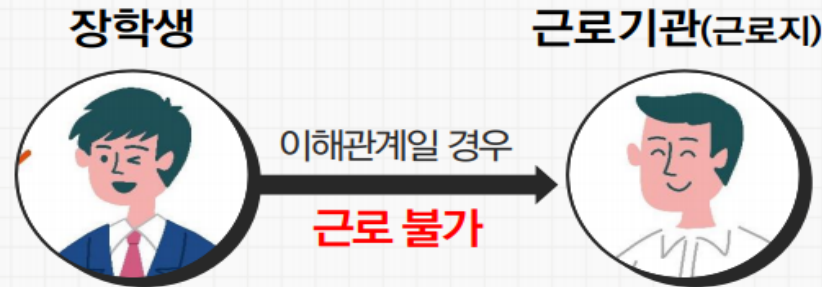
* 장학재단에서 다음연도에 이해관계 확인하므로 졸업하더라도 적발 시 반납해야 함

☆ 근로기관 및 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요!

배정된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와 이해관계(가족관계)가 있다면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이해관계(가족)가 있는 경우도 포함

근로장학생은 매칭(배정)되거나 매칭(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또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인 경우 해당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다른 근로지 또는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근로장학생 서약서 中

본인은 장학생이 본인 또는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생의 소속대학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 관계가 없는 장학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 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근로 서약서

학 과
학 번
성 명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참여 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부정근로 방지)**본인은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때 근로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학적변동(휴학,계적,졸업) 시 근로를 즉시 중단하고 장학지인림에 안내하겠습니다.
- (부정근로 방지)**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필에 동의합니다.
 -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 다. 허위서류 제출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근로중지, 적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지인림에 이들 사안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기관(근로지)으로 대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금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안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서약서 작성 필수

- 가. 부정근로 방지
- 나. 이해관계 회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

(근로장학생용)

가. 위치기반 동의는 선택사항임

나. 부정근로 의심발생 시 위치 기반 여부를 재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

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치기반 동의

Q 학생이 모르고 OO분 늦게 출근 찍었어요.

A 출근은 정시에 했으나 늦게 찍은 경우, 출근부 어플을 통해 수정요청을 하고 근로지 담당자님에게 수정사항 말씀드리면 됩니다.

(1시간 이상 늦게 찍은 경우는 정정사유서 제출)

Q 정정사유서 제출해야 되나요? (학생 과실 O = 제출, 패널티 있음 / X = 제출, 패널티 없음)

A 1) 출근을 찍지 않은 경우

학생이 출근을 찍지 않고 근로를 진행하였을 경우 정정사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근부 정정사유서는 익월 초 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출근을 늦게 찍은 경우

학생이 늦게 출근을 찍었으나 실제로 그 시간에 근무한 게 맞다면,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서 기관인정시간으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3) 출근은 찍었으나 퇴근은 찍지 않은 경우

학생이 출근을 찍고, 퇴근을 실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정사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근부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시간이 0시간이라고 나옴

Q 정정사유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장학 이메일 제출 : scholarship@cu.ac.kr

이메일 전송 후 수신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기반 동의 시 월 최대 2장, 미동의시 1장까지 제출 가능하며,
학기당 3장 이상 제출 시 다음근로 선발시 -10점 감점에 해당합니다.

Q 정정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출근부 앱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A 수정권한이 대학제출 이후에 장학지원팀에 생기므로, 다음달 중순까지 반영합니다.

ex) 7월 8일 미입력분 9일 제출 → 8월 중순까지 수정하여 8월 20일날 장학금 지급

Q 휴학이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A 휴학 또는 졸업 전 날 까지만 근로 인정합니다.

ex) 8월 23일 졸업, 8월 22일 까지의 근로만 인정. 이후 근로는 장학금 미지급

Q 8월 미졸자는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A 국가근로는 재학중인 상태에만 가능하며, 8월 23일 졸업식날 미졸자는 학기초과자가 되므로 졸업식 전날인 8월 22일까지만 근로 인정합니다. 이후 근로는 장학금 미지급